제323회 남양주시의회(제1차정례회)
제 1 차 기 획 행 정 위 원 회

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6. 10. 30.

기획행정위원회
전 문 위 원

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과

○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

2. 제안이유

○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기업지원 기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「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이차보전 사업의 안정적·지속적 운영을 위한 기금 존속기한 5년 연장 (2026. 12. 31. → 2031. 12. 31.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1

나. 예산조치 : 붙임2 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)

다. 관련부서 : 지역경제과

라. 입법예고 : 2026. 8. 20. ~ 9. 9. (20일간) /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안은 2026년 12월 31일 만료되는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,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재원으로, 기존 융자에 대한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자금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존속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됨.

○ 특히 왕숙 기업이전단지 분양기업의 신규 대출에 따른 이차보전 수요가 비용추계에 반영되어 있어, 기업 이전과 시설투자에 수반되는 금융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○ 또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이 가결되었으며, 연장 기간도 법에서 정한 5년의 범위에 부합하므로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절차 및 기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
○ 다만, 비용추계상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이차보전금 지출이 같은 기간 이자수입을 42억 6,400만 원 초과하는 만큼, 기금 보유액과 향후 지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, 지원 실적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붙임1 관계법령

☑ 「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

제8조(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
2. 「지방재정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
3. 「지방세징수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

② 정부는 시·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.

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·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☑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7. 24.>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붙임2 예산조치

비용추계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○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제3조(기금의 존속기한)

나. 비용 발생 요인

○ 기금 존속기한 연장(2026.12.31. → 2031.12.31.)

-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따라 중소기업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이 지속되어 기금 지출 발생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○ 추계 기간: 2027년 ~ 2031년(5개년)

※ 금번 조례개정으로 인해 연장되는 5개년을 대상으로 추계함

○ 중소기업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이 지속되는 것으로 추계함

나. 추계결과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년	2028년	2029년	2030년	2031년	합 계
총 소요액	**1,920**	**2,405**	**2,114**	**1,100**	**1,100**	**8,639**
이차보전금	1,920	2,405	2,114	1,100	1,100	8,639

○ 세부산출내용

- 이차보전금: 기존 지원 실적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상 연도별 융자 규모, 왕숙 기업이전단지 분양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대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함.
  - 2027~2029년: 기존 대출 실행분에 대한 지원 지속 및 왕숙 기업이전단지 분양기업의 신규 대출 발생에 따른 이차보전 수요를 반영함.
  - 2030~2031년: 기존 융자잔액에 대한 이차보전과 일반 육성자금의 지속적인 지원 소요를 반영함.

다. 재원조달방안: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

3.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: 해당없음

4. 작성자: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장 박미경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: 천원)

구 분	1차연도	2차연도	3차연도	4차연도	5차연도	계
세 입	775,000	825,000	875,000	925,000	975,000	4,375,000
예탁금 이자수입	575,000	575,000	575,000	575,000	575,000	2,875,000
공공예금 이자수입	200,000	250,000	300,000	350,000	400,000	1,500,000
세 출	1,920,000	2,405,000	2,114,000	1,100,000	1,100,000	8,639,000
이차보전금	1,920,000	2,405,000	2,114,000	1,100,000	1,100,000	8,639,000
재원 조달	1,920,000	2,405,000	2,114,000	1,100,000	1,100,000	8,639,000
기 금	1,920,000	2,405,000	2,114,000	1,100,000	1,100,000	8,639,000